

##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15.9.28.] [교육부령 제71호, 2015.9.25., 일부개정]



교육부(산학협력정책과) 044-203-6615

**제5조(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)** ①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설치·운영계획 신고서 및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계약학과 등의 설치·운영(폐지)계획서 1부
2.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
3.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(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) 1부
4. 계약서안(설치·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
[본조신설 2015.9.25.]